

한-터키 FTA 원산지 절차 요약

구분		한터키 FTA		
발효일자		2013. 5. 1.		
협정국		터키		
원산지 증명서	발급주체	수출자		
	서식	송품장(수출자가 그 제품을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하는 상업송장, 인도증서 등) -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(전자서명 포함)로 작성되어야 함		
	유효기간	발급일로부터 12개월		
	제출면제기준	미화 1천 불 이하의 소액물품		
	참고사항	[협정적용 영역] ⇔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EU FTA와 유사(3개 품목만 다름)		
원산지 부호 (협정적용 영역)		- KR : 한국 주권하의 육지, 해양 및 상공,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- TR : 영토, 내수, 영해 및 그 상공,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생물이나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, 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터키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해양지역		
부가가치 계산 방법	계산방법	MC법		
	부가가치기준	20~60%		
	기준가격	EXW		
	비고	비원산지 재료가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$\text{부가가치비율} = \frac{\text{비원산지재료비}}{\text{공장도가격(EXW)}} \times 100\%$		
역외가공		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 결정		
제3국 송장		송품장은 비당사국에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함		
원산지 검증	검증	검증방법	간접	
		검증주체	수출국 세관	
	회신	회신기간	10개월 이내 수출국 결정	
		회신주체	수출국 세관	
	미회신 조치	협정관세 적용 제한		
근거조항	의정서 제26조			
참고사항	■ 한-EU FTA보다 완화된 원산지기준 적용품목(한-터키 FTA 운영지침)			
	품목	HS	한-EU	한-터키
	설탕과자	1704	모든 호(그 제품의 호 제외)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. 다만,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의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30% 미초과	모든 호(그 제품의 호 제외)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
	초콜릿 함유 식료품	1806	모든 호(그 제품의 호 제외)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. 다만,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의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30% 미초과	모든 호(그 제품의 호 제외)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
기타 비스켓	1905.90	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. 다만, 제11류의 것은 제외	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된 것	
■ 선착순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품목(한-터키 FTA 운영지침)				
품목	상품명	원산지결정기준		
		선착순 200톤 이내(완화)	200톤 초과시	
5205	면사(면85% 이상으로 재봉사와 소매용 제외)	인조스테이플섬유(카드:코용-기타 방적 준비 처리한 것 제외)로부터 생산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 ① 생사-견웨이스트(카드:코용-방적 준비 처리 한 것에 한함) ② 천연섬유(카드:코용-방적준비 처리한 것 제외) ③ 화학재료-방직용 펄프 ④ 제지원료	
5510	재생-반합성스테이플 섬유사(재봉사-소매용제외)		"기재생략"	
5408	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	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 생산 또는 최소한 2개이상의 준비-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염색작업 다만, 염색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%이하하여야 함	"기재생략"	